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3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박홍배 · 이수진 · 송재봉
한준호 · 민병덕 · 이정현
홍기원 · 박 정 · 김우영
김남근 · 윤준병 · 안도걸
이광희 · 이정문 · 김기표
최혁진 · 허성무 · 부승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분석·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 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가뭄의”를 “가뭄 감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보를”을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u>가뭄의</u> 예보) ① (생략)</p> <p>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예보를</u>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u>가뭄 감시와</u> 예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u>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u> 하여야 한다.</p>